충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32호

충남테크노파크 금고지정 신청 공고

충남테크노파크 금고 약정기간이 2024.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예산회계규정 제58조』에 의거 차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서규석

-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 2. 약정기간 : 4년(2024. 9. 1. ~ 2028. 8. 31.)
- 3.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
- 4. 금고의 주요업무
 - 가. 각종 수입금의 수납, 각종 지출금의 지급
 - 나. 수입지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다.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신청절차

- 1) 금고지정 설명회 : 생략
- 2) 관련서류 열람
 - 일 시 : 2024. 6. 5 ~ 6. 14/ 평일 09:00~18:00
 - 장 소 :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2101호 재정관리팀
 - 열람서류
 - · 2022~2023년도 회계결산서, 2024년 수입지출 예산서
 - 기타 금융기관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능한 한 제공)
- 3) 제안서(신청서)접수
 - 일 시 : 2024. 6. 17(월) 14:00 (시간엄수)

- 장 소 : 충남테크노파크 재정관리팀(종합지원관 2101호)
- 방 법:직접방문제출
- 제출서류 : 7부(원본 1, 사본 6)
 - 1건서류(제안서, 관련자료 등 각1부), 봉함날인 후 7부 제출
- 제출내용 : 제안서, 평가항목별 요구내용 및 관련자료 등
- 문의사항
 - 문의처 :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재정관리팀
 - 전화번호 : 041)589-0615, 팩스 041)589-0629

6. 제안서류 심사

- 1)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마련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충남 테크노파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 등 관련 기관의 공시자료와 비교하여 비공개로 객관적·공정한 심사평가
- 2) 재단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
 - 충남테크노파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청문)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면접에 응하여 야 함(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 책임)
- 3) 충남테크노파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시한 계획 또는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4)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 평가점수 합계 최고 득점자가 재단 금고 대상자로 선정

- 평가후 합계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출연금이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함
- 재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기한내 약정체결 미이행) 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으로 지정
- ※ 포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금고지정시 신청자격 1회에 한해 제한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붙임2

8.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1) 충남테크노파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이내에 「별지1」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거 약정 체결
- 2)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
- 3) 금고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 자체 부담
- 4) 각종 금융 전산시스템의 경우 2024. 9. 1일부터 실제로 정상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5) 재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며, 앞으로 금고지정시 신청자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출연금 납부

- 1) 재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는 매년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을 당해연도 9. 30일까지 충남테크노파크 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 ※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 매년 납부하기로 한 출연금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당해 금 융기관의 일반자금 연체이율을 적용 해당 일수 만큼 산출한 변상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1) 제출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는 금고지정심의위에서 결정하며, 제안서 등의 공개결정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2) 제출된 일체 서류(제안서 등)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시 주의를 요함(접수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임)
- 3) 재단 금고 선정을 위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붙 임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소 계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금융기관의 대 외적 신용도 및 	- 국내평가기관	(4)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2)	
	- 총자본비율	(4)	
	- 고정이하여신비율	(4)	
	- 자기자본이익률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	(2) (2)	
	소계	20	
2. 재단에 대한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예금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다. 적립금등 자금운용 방안		
	소 계	25	
3. 이용편의성 및	가. 관내지점의 수		
금고업무 수행능력	나. 수입·지출업무 편의 증진 방안	(12)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소 계	35	
4.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 · · · · · · · · · · · · · · ·	나. 재단과 협력사업 계획	(30)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I. 일반원칙

-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상대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3. 다만 평가항목5(지역사회 기여도 및 재단과 협력사업) 중 출연금 평가는 금융기관별 출연금액에 대한 상대평가에 의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0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4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4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4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2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2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재단에 대한 예금금리 (20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5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다. 적립금등 자금운용 방안 (12점)
 -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등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이용의 편의성 및 금고업무 수행 능력(25점)

- 가. 관내지점의 수(5점)
- 충청남도 소재 영업점포수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수입·지출업무 편의 증진방안(12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입·지출금 처리 편의 증진 방안, 매일 자금 수입·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전산시스템(H/W, S/W) 구축 방안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테크노파크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지역사회 기여도 및 재단과 협력사업(35점)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3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 금융기관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1점)
- 나. 재단과 협력사업 계획(30점)
 - 재단과의 협력사업(재단 발전, 입주기업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등)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5점)
 - 출연금 평가방법 : (해당 금융기관 출연금/최고 제시 금융기관 출연금) × 25점
 - ※ 당해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I. 금고지정 제안서 법인현황 및 작성방법

가. 주의사항

○ 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 현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고, 항목 순서와 취지에 따 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

나. 작성방법

- 제출서류는 제1장부터 항목 순서별로 작성하고, 용지규격은 A4종, 글씨는 한글 (휴먼명조), 글씨크기는 중심내용 부분을 14포인트로 하고 분량은 제한이 없음
-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자 (기관명)에 날인하여야 한다.
- 금고지정 신청서(붙임 2)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금융기관 (법인)의 정식명칭을 사용하여 신청서 작성
- 제안서류의 신뢰성 입증을 위하여 각서(붙임 3) 및 사용인감확인서 (붙임 4)를 제안서 제출공문 첨부물로 함께 제출
- 평가항목별 실적과 계획은 제시된 작성년도, 기준시기 등이 명시된 기준에 의하며 견출지 부착
-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는()안에 표기하고, 서식을 제시한 것은 서식대로 작성하되 주석은 해당서식의 하단에 기재하고, 첨부자료는 색인표를 붙여 항목순서대로 편철하여 부속자료로 제출
- 제안서는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제안서 요약을 간략히 작성하여 제안서와 같이 제출
- 소숫점은 둘째자리까지 표기(세째자리에서 반올림)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 증빙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사용인감 날인
- 증빙서류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한글번역문 첨부

제1장 법인 현황

1. 법인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표기함

※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확인서

2. 법인개요

- 연혁 및 주사무소 소재지
- 자본금 현황(최다 출자자 순) / 2024. 3. 31일 기준

(단위: 억원)

자 본 금	주 요	주 주 현	황 (1%약	기상)		비고
(납입자본금)	주 주 명	직	업	7]	타	비고

○ 요약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2023. 12. 31 기준)

※ 회계법인의 검토필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사본첨부)

3.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사항

(2024. 3. 31 기준)

성 명	직 책	주요 담당업무	주 요 경 력	비고
			비교적 상세히	

4. 점포 및 직원현황

(2024. 3. 31 기준)

그 ㅂ	점 포 수			직 원 수			비고
구 분	계	지점	출장소 등	계	정규	비정규	비포
전국(A)							
충남(B)							
비율(B/A)							

제2장 목적 및 금고운영계획

- 재단 금고 지정신청 목적과 취지를 기재
- 금고지정시 금고운영의 기본방침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하되 확실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내용을 작성

제3장 평가자료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기관별	Моо	dy's	S8	SP.	Fit	tch
분류 평가일자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 국외 평가기관은 3개사(Moody's, S&P, Fitch)에 한함
- 2020년 3월 31일 기준 최근(이전) 신용평가 결과 기재
-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 등 공시자료와 일치
- 국외 평가기관(3개사) 신용평가서 첨부

○ 국내 평가기관

기관별 평가일자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국내 평가기관은 3개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에 한함
- 2024년 3월 31일 기준 최근(이전) 신용평가 결과 기재
-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 등 공시자료와 일치
- 국내 평가기관(3개사) 신용평가서 첨부(기업신용평가 등급)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재무구조의 안전성)

(단위:%)

<i>≿</i>].	P	비 율				
· වි	목	평 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자본	 -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자기자년	 -이익률					
유동성커바						

- 최근 4년간 실적(2020~2023)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 등 공시자료와 일치(금융감독원의 연도별 경영지표 결과 공문 첨부 가능)

2. 재단에 대한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정기예금 예치금리			
구 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제안금리(A+B)				
기준금리(A)				
우대금리(B)				

- 제안금리는 기준금리 + 우대금리로 함
-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COFIX(신규취급액기준) 2024년 4월 금리 적용(제안시 3.54% 동일하게 기재)
- 신규예치금에 대한 기준금리 변동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공시하는 COFIX 금리 적용(신규취급액기준, 변동 공시일부터 적용)
- 우대금리는 우리재단에 추가로 제공하는 금리로써 고정금리로 함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수시입출금식(MMDA) 예금금리

(단위:%)

구 분	제안금리(A+B)	기준금리(A)	우대금리(B)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일정금액을 7일 이상 예치시 정기예금과 비슷한 금리를 주는 고금리로써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제안금리는 기준금리 + 우대금리로 함
-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COFIX(신규취급액기준) 2024년 4월 금리 적용(제안시 3.54% 동일하게 기재)
- 신규예치금에 대한 기준금리 변동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공시하는 COFIX 금리 적용(신규취급액기준, 변동 공시일부터 적용)
- 우대금리는 우리재단에 추가로 제공하는 금리로써 고정금리로 함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적립급등 자금 운용 방안(계획서평가)

- 재단에서 운용중인 적립금등의 자금운용 방안
 - 중도해지 및 운용결과에 따른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안전성)
 - 운용기간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기간별로 제안 (예, 6월, 1년, 2년, 3년, 4년, 5년등)

4.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및 금고업무 수행능력

가. 도내 영업점 수(2024. 3. 31일 기준)

	영업점 내역			
시군별	영업점 명칭 (지점·출장소)	소 재 지		
합 계		~ 개소		
~ 시(군)	소 계	~ 개소		
	○○지점	○○읍·면·동 ○○로 ○○(도로명 주소로 표기)		
	○○출장소	○○읍·면·동 ○○로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영업점 명칭은 본점, 지점, 출장소 순으로 영업 점포만 기재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2023년말)의 점포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2024.1.1.~2024.3.31일 중에 증감된 영업점은 증빙서류 첨부(법인 등기부등본 등)
-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 등 공시자료와 일치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순으로 작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수입·지출업무 편의 증진 방안(계획서평가)

-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입·지출금 처리 편의 증진 방안
- 매일 자금 수입·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자금일보등)
- 전산시스템(H/W, S/W) 구축 방안
- 금고가 수행하여야 할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계획

다. 금고업무 수행경험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약정 실적

구 분	금고약정 실적(개소)	회계명	약정기간
전국광역단체 소계			
예) 서울특별시	1	예)일반회계,기금(3개)	2021.1.1.~2024.3.31.
전국기초단체 소계			
예) 서울(강남구)	1	예)특별회계,기금(5개)	2021.1.1.~2024.3.31.

- 최근 4년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약정 실적(2021.1.1.~2024.3.31.)
- 최근 4년간 1개 자치단체에 2회이상 약정실적이 있는 경우 1개소로 기재
- 1개 자치단체에 2개 회계이상(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등) 약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1개소로 표시
- 금고약정서 사본 첨부(→목록만 제출, 지방재정365에서 확인 예정)

5. 재단에 대한 기여도 및 협력사업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1)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활동 등

가) 총괄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기여건수	기여금액	비고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3.31.			

- 기여실적 범위는 충청남도 관내로 함
- 기관, 단체, 개인에게 지원한 현금·현물(현물은 금액으로 환산)
- 기초자치단체(시군)의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제외
- 교육청(도 및 시군) 소관 기여실적 제외
- 금융기관 자체행사 기여실적 제외(고객 및 소속직원 이벤트 행사 등)
- 기여실적 증빙자료 별지 첨부(허위작성 발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나) 기여실적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분 야	기여일자	기 여 내용	수혜자	기여금액
계				

-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총괄의 기여금액과 일치
- 분야는 6개, 기타로 구분 작성(복지, 문화예술, 체육, 농업, 장학금, 언론, 기타)

2)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 여부

O 금융업계의 탈석탄은 향후 국내 석탄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Project Financing)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대외 선언(언론 등) 하거나 정관에 반영한 후, 석탄금융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이행하는것

연 도	탈석탄 선언 여부	선언일	석탄금융투자여부	비고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최근 3년간(2021.1.1. ~ 공고 게시일 전월까지) 기준으로 평가
-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투자 여부로 평가
-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투자 여부 범위는 국내로 함
- 탈석탄 선언은 법인대표가 선언식, 기자회견등 공개적·공식적인 절차에 한함.
- 증빙자료 별지 첨부(허위작성 발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3)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친환경에너지 발전 투자 현황	비고
한 포	(SPC 투자횟수)	(총사업비/FI 투자금액)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최근 3년간(2021.1.1. ~ 공고 게시일 전월까지) 기준으로 평가
-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한 횟수로 평가
-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실적 범위는 국내로 함
-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범위는 석탄 또는 폐기물 등의 연료에서 청정에너지(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지열, LPG, LNG)로 전환한 것
- 증빙자료 별지 첨부(허위작성 발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가. 재단과 협력사업 계획

1) 재단에 대한 출연금 계획

	비고				
구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출연금					

- 주) 1. 출연금은 분할(1년씩) 가능하며, 분할시 균등 출연 요망
 - 2. 출연금액은 매년 9. 30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연체 이율을 적용 해당일수 만큼 산출한 지체변상금 부과
- 2) 기타 재단에 대한 제안사항 계획(자유롭게 기재)
 - 재단 발전 및 직원 편익 제공 노력
 - 재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노력 등

<붙 임1> 제안서표지

충남테크노파크 금고지정 제안서

0000은 행

금고지정신청서									
법인명			법인등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	등록번호					
↓)]]	본점			전호	}				
소재지	지역본부 사무소			전호	}				

(재)충남테크노파크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위와 같이 충남테크노파크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2024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인)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각 서

- 1. (재)충남테크노파크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 락하며 신청선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항이 판명되 었을 때에는 심사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한다.
- 2. (재)충남테크노파크 금고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3. (재)충남테크노파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4년 월 일

○ ○ ○ ○ 은 행 은 행장 ○ ○ ○ (인)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사용인감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팀장(시도지점 명 또는 본점의 팀명으르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 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 ○ ○ ○ 은 행 은 행 장 ○ ○ ○ (인)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1.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Ⅱ. 참고 자료

1. 직원 현황

2024.05.1기준

구 분	원 장	부서장	직 원	파 견	합 계
· 현 원	1	6	179	3	189

2. 평균 잔고

(단위: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3	평 균
평균잔고	236	261	469	434	464	373

3. 예산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3	평 균
예	산	2,531	2,819	2,785	2,737	2,324	2,639

4. 적립금등 자금운용 대상 금액

(단위: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3	평 균
금 액	133	134	135	142	149	139

〈별 지1〉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재)충남테크노파크의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재)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라 한다)와 0000 0000(이하 "00"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금고업무)

충남TP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융업무(이하 "금고업무"라 한다)를 00에게 취급하게 한다.

제 2조 (취급업무)

금고의 취급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각종 수입금의 수납
- 나. 각종 지출금의 지금
- 다. 수입지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금
- 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마. 기타 충남TP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제 3조 (법령, 규정, 규칙준수)

00은 이 약정에 정한 조항 이외에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 규정,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책임)

가. 00은 충남TP의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00은 사무취급상 충남TP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00과 00의 본점인 00은행이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다. 00은 매각, 합병 등 어떠한 경우라도 충남TP의 예치금 인출을 보장한다.

제 5조 (보관현금의 운용)

가. 00은 충남TP의 금고 보관 현금 중 지급상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00은 충남TP의 요구에 의하여 00이 취급하는 상품 중 충남TP가 요구하는 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나. '가' 항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는 종목별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 6조 (운전자금의 운용)

충남TP의 필요에 의한 운전자금에 대하여 00은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종류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7조 (장부의 비치)

본 약정 체결 후 00은 충남TP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8조 (인출금액 제한)

가. 00은 충남TP의 지급전표 제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인출에 응한다. 나. 00은 인출금액이 일정금액(오천만원) 이상일 경우 재정운영부서 관리자의 유선확인을 통해 정당여부를 확인하여 인출에 응해야 한다.

제 9조 (인출지역 제한)

가. 00은 충남TP의 지급전표 제시 및 인출요청은 충남테크노파크 금고 지정점로 제한한다.

나. 00은 '가' 항의 요청을 응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Delta\Delta$ 지점으로 변경하여 인출에 응할 수 있다.

다. 00은 '나' 항의 사유발생시 충남TP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0조 (특약)

상기 제8조 (인출금액제한), 제9조(인출지역 제한)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문제나 손해발생시 00이 책임을 진다.

제 11조 (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00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조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가. 00은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충남TP가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출장소의 설치와 운영상 필요한 경비일체는 00이 부담한다.

나. 00은 금고 사무취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금고출장소에 전담직원을 배치 할수 있다.

제 13조 (집무시간)

가. 금고의 집무시간 및 휴일은 충남TP의 집무시간 및 휴일에 의하며, 토요일은 휴일에 준한다.

나. 충남TP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 (약정해지)

충남TP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00에게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충남TP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

- 나. 00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
- 다. 00이 약정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라. 기타 충남TP의 사정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제 15조 (약정해지시 사전승낙 및 통보)

약정기간 만료 전에 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 숭낙 및 통보를 하여야 한다.

- 가. 충남TP 00 쌍방이 모두 금고 업무를 정지 시키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
- 나. 충남TP와 00중 일방이 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
- 다. 00이 약정기간 내에 금고 업무 취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이전에 충남TP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약정해지시 인계)

제 15조의 경우 00은 충남TP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출납계산서와 수입, 지급 및 미결에 관한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충남TP 회계직원 또는 충남TP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7조 (금고검사)

충남TP는 금고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00이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00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 18조 (관련서류 보관)

충남TP은 금고업무 취급 시 발생한 각종 서류를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보관 (10년 이상) 하여야 한다.

제 19조 (약정내용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0조 (약정조문의 해석)

이 약정의 조문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 니할 때에는 충남TP의 해석에 따른다.

제 21조 (보칙)

이 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 22조 (약정기간)

-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 까지로 한다.
-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충남TP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서 규 석 (직인)

00 $\Delta\Delta\Delta\Delta\Delta\Delta$ \bigcirc \bigcirc \bigcirc (직인)